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자산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삼성KODEX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(은-파생형)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2.01 - 2012.12.31
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

한국투자증권, 유진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 12. 20	제 6 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추 가	④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. 1. 제 34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보관 및 관리 2.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3.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
2012. 12. 20	제 12 조 (투자신탁회계기간)	1. 최초회계기간 : 최초설정일로부터 2012년 1월 마지막	1. 최초회계기간 : 최초설정일로부터 2012년 1월 마지막 일 2. 제 1 호의 회

	일까지 2. 제 1 호의 회계기간 이후의 회계기간: 최초회계기간 익일로 부터 매 1 년간 추 가	계기간 경과후 회계기간 : 제 1 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 터 2012년 12월 31 일 3. 제 2 호의 회계기간 경과후 회계기간 : 제 2 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 터 매 1 년간
2012. 12. 20	제 36 조 (운용 제한) ①-2. 나. <생략>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주택저당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	①-2. 나. <생략>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
2012. 12. 20	제 39 조 (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) ②제 1 항에서 “비용” 이라 함은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 수수료 2. 증권 및 파생상품	②제 1 항에서 “비용” 이라 함은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 증권 등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매매 수수료 2. 증권 등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예탁 및 결재비용

	<p>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</p> <p>3.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</p> <p>4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</p> <p>5.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</p> <p>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</p> <p>7.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</p> <p>8.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출비용</p> <p>9.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비용</p> <p>10. 법 제 442 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</p> <p>11.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 산출 비용</p> <p>12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</p>	<p>3.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</p> <p>4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</p> <p>5.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</p> <p>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</p> <p>7. 증권 등 자산(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)의 가격정보비용</p> <p>8. 해외주식등, 해외파생상품 등의 투자정보비용</p> <p>9.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</p> <p>10.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 관련 비용</p> <p>11. 법 제 442 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</p> <p>12.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</p> <p>13.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 산출 비용</p> <p>14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③제 2 항제 12 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</p>
--	--	--

		<p>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추 가</p> <p>추 가</p> <p>추 가</p> <p>추 가</p>	<p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④제 3 항호에서 정하는 “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”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건당 결제비용 (transaction fee)</p> <p>2. 보관비용 (safe-keeping fee)</p> <p>3. 기타 부수비용 (out-of-pocket expenses: physical registration, DR conversion, tax reclaim, income collection 등)</p>
2012. 12. 20	제 40 조 (투자신탁의 해지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 일 이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 동의한 경우</p> <p>2.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</p>

		한다. 2.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 추 가 추 가 ②제 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(이하 "해지기준일"이라 한다)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	는 경우 3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4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.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. 투자신탁의 피출수합병 4.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
--	--	---	---

		추 가	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 ③제 1항제 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제 2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2012. 12. 20	제 41 조 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① 생략 1. 지급기준일: 회계기간말일의 영업일	① 생략 1. 지급기준일: 회계기간 종료일.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
2012. 12. 20	제 48 조 (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)	①-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	①-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영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)

		지정참가회사 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③제 2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,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--	--	--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165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